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5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7.

발 의 자 : 정태호 · 권철승 · 김영환  
김 윤 · 임호선 · 허성무  
조정식 · 소병훈 · 윤준병  
이주희 · 이학영 · 최혁진  
박해철 · 박민규 · 양문석  
서미화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 
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 
위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창업 준비 단계에서도 이동, 서류·행정  
업무, 거래처 응대 등 실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창업 자체가 지연·  
포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, 창업 초기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하  
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현행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 
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여 창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 
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10조  
의3제1항).



##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제1항 중 “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 생활을 지원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지원인”이라 한다)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·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을 하거나 안정적·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, 그 직업생활 및 창업·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지원인”이라 한다)을 보내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
2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예비창업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의3(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)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지원인”이라 한다)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·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0조의3(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) ① ----- ----- ----- -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을 하거나 안정적·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, 그 직업생활 및 창업·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지원인”이라 한다)을 보내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</p> <p>1.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</p> <p>2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예비창업자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